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	보도참고자료		
	보도일시	2008.7.23(수) 조간부터	
배포일시	2008. 7. 22(화) 10:3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과
담당과장	안내형(2150-5450)	담 당 자	이철규 사무관(2150-5453)

제목: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더욱 강화

-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시행 -

□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사업(토목사업은 500억원,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)의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, 사업규모 등을 협의·조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음

* 근거 :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

□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'예산 10%절감"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노력이 대폭 강화되어 추진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7.23(수)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을 개정·시행할 계획임

□ 금번 개정안은 관리 강화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,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각 부처에 위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

○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중·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하고 설계관리 및 비용검토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

○ 총사업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페널티 강화

○ 자율조정 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낙찰차액 등 부처 자율조정항목의 확대를 통한 총사업비 조정절차 간소화 및 자율권 확대

<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의 주요 개정내용 >

1 총사업비관리대상 확대

○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중·소규모사업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가 및 예산낭비를 방지

- 토목사업 : (현행) 500억원 이상 → (개정) 300억원 이상
- 건축사업 : (현행) 200억원 이상 → (개정) 100억원 이상

2 설계적정성 검토제도 도입

○ 사업비 증가가 초래되는 과다설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 요청시 조달청 등에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

- (기본계획 단계) 설계착수 전 설계수준(등급), 설계지침 등 마련
- (기본·실시설계) 정해진 사업비 범위내 적정설계 여부 검토

* 적용대상 :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건축사업
(토목사업은 현장지형 등에 따라 설계되므로 검토 실익이 적음)

3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

○ 착공후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필요시 제3의 기관(조달청 등)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,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조정시 참고·활용

4 비용 사전검토 등 사업의 타당성검증 강화

○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 아닌 400~500억원의 신규사업과 법정시설,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여부가 기 결정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적정 사업규모와 적정비용을 간략하게 분석하는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

5 **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리 강화**

○ 당해 건설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

○ 설계경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정해진 사업비를 초과한 당선작 선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

6 **재정페널티제도 강화**

○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발주하는 등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 위반시 재정페널티 부여범위 확대

▪ 재정페널티 부과대상으로 사업시행부처 → 조달청까지 확대

○ 재정페널티 부과기준을 명확화

7 **기타 총사업비 조정원칙 및 기준 보완**

○ 과업범위 인정 기준 및 시설부대경비 조정기준 등 보완

○ 민간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기준(잔여공사비의 2%) 등 신설

○ 중앙관서 자율조정한도액의 상향(현행 낙찰가의 8% → 10%)조정 및 자율조정항목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자율조정권을 확대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참 고 **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**

1 도입 목적

○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'94년부터 도입

* 국가재정법 제50조(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,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5)

2 대상 사업

○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

▪ 토목사업 :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

▪ 건축사업 :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

<관리대상 제외사업>

·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
· 융자사업
· 국방부소관 군작전기지 등 보안을 요하는 사업
· 민자유치사업(민간투자법 적용대상) : 별도로 총사업비 관리
· 기타 재정부장관이 관리대상사업에 포함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

3 총사업비관리의 주요내용

○ 사업규모,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 협의·조정

○ 「총사업비 관리지침」을 제정하여 운용

▪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조정기준,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을 규정